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6

서 울 고 등 법 원

춘천제1행정부

판 결

사 건	(춘천)2017누2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1. A 주식회사
	2. B
피고, 항소인	1. [redacted]군수
	2. [redacted]시장
제1심판결	춘천지방법원 2017. 1. 20. 선고 2016구합50431 판결
변론종결	2017. 6. 7.
판결선고	2017. 7. 5.

주 문

1.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별지 취득세 등 재부과내역 목록의 피고들이 해당 처분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6

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(각 가산세 포함)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[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대한민국 사이의 매매대상은 '토지에 정착하여 생육하는 나무 전체'가 아닌 '위 나무 중 근주(根柱)를 제외한 부분'에 한정되어 있고, 현행 법령 상 나무의 일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리(벌채)하여야 하므로, 결국 매매약정 당시 원고들이 취득한 권리는 '입목' 자체의 소유권이 아니라 '나무를 벌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' 또는 '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권한 및 이에 따라 벌채된 원목(목재)의 소유권'이라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(벌채 목적으로 입목 자체를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) 취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]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, 피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6

재판장 판사 김재호

판사 박성구

판사 박병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6

(별지)

취득세 등 재부과내역 목록

(단위 : 원)

순번	처분청	재부과처분일	상대방 (원고)	취득세 대상금액	무신고 가산세	납부불성실 가산세	농특세 대상금액	납부불성실 가산세
1	[redacted]군수	2016. 10. 11.	B	3,890,000	778,000	657,020	389,000	65,700
합계			취득세 5,325,020				농특세 454,700	
2	[redacted]시장	2016. 10. 5.	A 주식회사[1)]	1,651,000	330,200	320,450	165,100	32,040
합계			취득세 2,301,650				농특세 197,140	

1)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별지로 첨부한 취득세 등 재부과내역 목록에 의하면 이 부분이 'B'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[redacted]시장이 재발행한 납세고지서 및 2016. 10. 25.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는 'A 주식회사'의 오기임이 명백하다.